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분진학원

이 사 회 귀 중

본 감사인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2017년 회계연도 이사회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
또한 본 감사인은 동 법인이 설립한 강원관광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인은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분진학원(강원관광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분진학원과 강원관광대학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지적 및 권고 사항 :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.

2018년 4월 10일

학교법인 분진학원

감 사 신 동욱 
감 사 남 상욱 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무국장
성 명 김 응 식 